◉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6-17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구명조끼 등의 착용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보령해양경찰서장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자

연 번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일부기재)	자진납부 기 한
1	PUTRA H**** YULI-ANTO	95.05.28	전라남도 목포시	2026. 11. 20.(금)
2	RISKA N** APNAN	92.05.15	전라남도 목포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가. 과태료 부과 원인 사실: 2026. 8. 17.(월) 항내 운항 중 구명조끼 미착용

나. 부과내용: 과태료 900,000원 *기한 내 자진납부 시 720,000원

다. 근거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5항제4호(과태료),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20.(금)

나. 제 출 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4층)
(연락처: 041-402-2248 / 팩스: 041-402-2948 / 전자우편: f1154035@korea.kr)

다. 체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납부방법: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41-402-2248)

나.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5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거나,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 041-402-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